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정태호 · 안호영 · 정준호
이수진 · 전현희 · 한준호
이정문 · 박해철 · 김 윤
김주영 · 임호선 · 조정식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구성한다. 1. 2. (생 략) 3.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u> <u>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u>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u> <u>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u> <u>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u> <u>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u> <u>포함하여야 한다.</u> 가.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u> <u>람</u>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 <u>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u> <u>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u> <u>하는 사람</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